#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3104 제출년월일: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양천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·교육·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,

나.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 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59

○ 시설규모 : 70 m² (신목종합사회복지관 3층, 사무실)

※ 사무실 외 기타 시설은 종합복지관과 시설 공유를 통해 센터 운영

○ 주요시설 : 사무실, 상담실, 강의실, 강당 등

○ 인력운영 : 5명 (센터장 1명, 과장 1명, 사회복지사 3명)

나, 주요 위탁 내용

○ 위탁기간 : 3년(2026. 1. 1.~ 2028.12.31.)

- 위탁업무
  - 양천외국인주민센터 관리 · 운영 및 사업 일체
    - 일반 상담 및 법률,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
    - 한국어교육.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교육사업 운영
    - 문화체험 행사, 의료지원, 인권문화다양성 사업 등 운영
    - · 외국인 유학생 대상 힐링이트 교실, 외국인대표자 캠프 등 여가리더십 프로그램과 함께 베이커리 등 기술교육 및 학령기 이동 대상 영어교실 운영 등 특화시업 운영
- 소요예산 : 353,065천원(2025년)
- 산출근거 : 인건비 211.528천원. 운영비 13.607천원. 시엄비 127.930천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  - ※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권고) ('25.07.14.)
    - · 권고사항: 센터별 기능 정립 및 종합 비전 수립 등

# 다.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, 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- 다양한 기관(병원, 경찰서, 법률사무소, 노무사, 봉사자, 종교단체 등) 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.

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###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및 제18조

#### 제7조(지원의 범위)

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19. 9. 26., 2021.7.20.〉 10.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

### 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· 운영 등)

-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(이하 "지원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〈개정 2021.7.20.〉
-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·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〈신설 2021.7.20.〉

#### 제20조(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)

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5.14, 2017.1.5, 2021.7.20〉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편성 요구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서울시 외국인주민센터(6개소) 민간위탁 추진 계획

(다문화담당관-7503, 2025.6.27.)

※ 작성자 :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김정애(☎ 2133-8690)